

서울특별시 시제품제작소(용산센터)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0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4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장비와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제품제작소를 조성하여 메이커 창업문화를 확산하고자 함.
- 나. 창업지원 분야는 전문성과 민간창업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창업생태계 형성 및 활용이 중요한 바,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전문지식·기술, 노하우 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'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'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시제품제작소(용산센터)
- 소재지 : 용산구 청파로 112(나진상가 15동 B1층)
- 시설규모 : 416㎡(약 127평)
- 공간구성 : 시제품제작실, 회의실, 교육장 등
- 주요장비 : 레이저 절단기 4대, CNC 밀링기계 1대, 플라즈마 절단기 1대 등 총 36종, 41대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6. 5월 ~ 2019. 4월)
- 위탁방법 : 수의협약
- 대 상 : (주)엔피프틴(대표 : 허제)
- 사 업 비 : 567백만원('16년)
- 위탁내용
 - 시제품 제작소 관리 및 운영 전반
 -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(시제품제작, 교육, 메이커톤 등)
 -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(안전점검, 시설유지·보수관리 등)
 - 인력선발 및 운영 전반(운영매니저, 교육강사 등)
 - 기타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

다. 민간위탁 필요성

- 일반시민, 창업가에 대하여 창업지원 및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 해당사무는 시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라 볼 수 없으며 창업관련 전문적인 지식 등이 요구되는 사무임
- 창업지원 분야는 전문성과 민간창업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창업생태계 형성 및 활용이 중요한 바,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창업환경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 및 다양한 창업주체와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3조(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)

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(이하 "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5.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

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
4.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·구조·품질·성능·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
과.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물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·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○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

제18조(일자리 지원시설)

② 시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창업 보육공간 지원, 정보제공, 교육,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2. 창업 자금 및 전시·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
3.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'16년 민간위탁금(567백만원) 확보 및 '17년
예산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창업지원과 창업정책팀 이 웅 (☎ 2133-5505)